남성고등학교 학교 규칙

제14조(교외체험학습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사설학원,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(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"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)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③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신청시 5일 이내, 2회 연속 신청 불가(1회 실시 후 5일 경과 후 신청가능)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.

④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, 학기초와 학기말, 방학 전후, 고사 기간 전후, 시험 기간, 성적 확인 기간, 대학수학능력시험(3학년) 실시 이전(2주전)은 피해서 실시한다.

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.

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,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)까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한다.

⑦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,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이라고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⑦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